

##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세부 시행지침

제정 2009.04.27.  
개정 2011.03.30.  
개정 2011.09.28.  
개정 2014.08.04.

**제1조(목적)**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응시자격)** ① 전문박사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2학점이상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.  
② 전문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45학점 이상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.

**제3조(응시절차)** 영어시험 및 전공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(소정서식)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전공시험)** ① 전문박사 전공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한다.  
② 전문석사 전공시험은 전공필수교과목의 이수 및 합격으로 대체하며, 성적은 전공필수과목평균점수(환산점수)로 한다. <개정 2011.9.28.>  
③ 원장은 본 지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**제5조(출제 및 채점위원)** ① 전공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.  
②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6조(영어시험의 대체시행)** ① 외국어시험 중 영어과목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또는 TOEFL(PBT성적 제외)성적으로 대체하여 시행하며, 합격 인정 기준은 TEPS 성적 701점(단 전문박사는 601점), TOEFL은 이에 준하는 성적 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4.8.4.>  
② 입학시에 일정 점수 이상의 영어성적을 지원요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어시험을 부과하지 않는다. <신설 2011.3.30.>  
③ 영어과목에서 합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전(1학기는 4월초, 2학기는 10월 초)까지 제1항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성적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
④ 원장은 학생들이 제출한 성적에 대하여 합격인정 처리하고, 그 결과를 분기별로 교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)** ① 영어시험 성적(TEPS 또는 TOEFL)은 2년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. 다만, 본교 대학원 입학시 또는 입학 후 취득하여 인정받은 성적은 최종과정 졸업시까지 인정한다.  
② 제1항에서 인정받은 성적이라 함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 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성적을 말한다.

**제8조(외국인학생의 외국어시험)** 영어가 모국어(공용어 또는 공식 언어 포함)인 외국인학생은 영어시험 대신에 한국어시험에 응시해야 한다.

**제9조(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)** ①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은 3월과 9월에 각각 교무처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.  
② 한국어 시험의 시험시간은 60분으로 한다.  
③ 한국어 시험의 시행방식은 필답고사형식으로 석사·박사과정으로 구분하고, 학문분야별로도 인문·사회계열, 자연계열,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  
④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한국어관련 교수의 구술고사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다.  
⑤ 한국어시험(구술고사 포함)의 시험위원은 해당분야를 전공한 본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3인으로 구성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다.  
⑥ 정규학기 또는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과목으로 개설된 한국어 과목(한국어와 한국문화 1,2)을 수강하고, 그 성적이 "C-이상" 또는 "S"를 취득한 경우 한국어시험을 면제하되,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.  
⑦ 원장은 매학기 한국어시험(구술고사 포함) 응시 대상자를 선정하여, 그 명단을 소정 기일내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합격인정점수)** 시험(영어과목 제외)에 있어서 과목별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석사과정

은 60점이상, 박사과정은 70점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11.9.28.>

**제11조(재응시)**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할 수 있으며, 응시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**제12조(합격자 발표 및 보고)** 원장은 매학기 시험 종료 후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, 그 결과를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문서의 보관)** 논문제출자격시험 종료 후 시험 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문제지 원안 및 답안(채점)지 : 5년
2. 결과표(사정일람표) : 준 영구
3. 기타 서류 : 1년

**제14조(내규, 지침 등 보고)** 원장은 규정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정한 논문제출자격 영어시험 및 전공시험에 관한 세부시행지침 등에 대하여 시행하기 전에 이를 교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부칙** <2009.4.27.>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1.3.30.>

이 지침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1.9.28.>

이 지침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4.8.4.>

이 지침은 2014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